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가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의2)
- 준용규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4조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○ 본 조례안은

-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, 이는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,
- 안 제14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됨(2021. 8. 26.)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, 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0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해당 조례에 규정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어르신들의 복리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의2)

1) 2027. 12. 31. 까지로 연장

나. 타 법규 제목 개정에 따른 제명 현행화(안 제14조)

다.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결과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3) 인권영향평가 결과: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성별영향평가 작성 제외 대상

다. 입법예고(2022. 8. 25. ~ 9. 14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영등포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5조의2 전단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<u>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의 일반회계 출연금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재원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영등포구</u>----- ----- 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위원은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</u>----- 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⑤·⑥ (생략)

제14조(준용)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준용) -----

----- 「서울특별
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
규칙」--.